

##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### 1. 동물성 식품 대상 규정(안 제1조의2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잔류물질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 평가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 규정
- 식육 비중 등 축산물의 특성, 위해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외국 대부분이 위생평가를 실시하는 품목부터 우선 시행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(기타 식육 또는 기타알제품)\*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서 정하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식육 또는 알(타조고기 등)  
\* 구체적인 범위는 식약처장이 고시토록 규정
- (식육·알함유가공품) 식육·알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·가공한 것으로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은 가공식품(냉동계란말이, 치킨까스 등)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동물성 일반식품의 사전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안전 확보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# 2.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업무 명확화(안 제13조의3, 제14조)

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수출지원 업무의 안정적 수행 및 기반 구축·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
- 현재 수행 중인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

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수출식품등 부적합 원인조사, 수출업소등 현지실사 대응 지원 등 규정, 일부 업무\*를 지방청에 위임  
\* 수출업소등 위생관리 지원 및 기술지도, 부적합 원인조사 및 현지실사 대응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체계적인 수출식품 안전성 지원으로 국내 식품의 수출경쟁력 제고

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## 3. 해외식품등 검사 및 실태조사 위탁 등(안제6조의2, 제14조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문화, 인터넷 발달 등으로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 반입 규모 지속 증가 추세
-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식품 등에 대한 구매·검사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실태조사 시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 가능
  - \* 공정거래위원회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정보), 관세청(「관세법」 제241조제1항에 따른 정보) 등
- 해외식품등의 검사·실태조사 등 집행적 업무는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해외식품등을 구매·소비하는 국민의 건강 보호 지원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